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

(제정 2010. 4. 1.)

(전부개정 2023. 11.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편성) ① 학군단은 총장 부속기관으로 한다.

②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현역장병)과 본교에서 채용한 군사교육요원(예비역 교관, 행정관 등)으로 편성하며, 제3조 각 호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한다.

제3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
2.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
4. 본교에 소속된 군위탁생 관리
5. 그 밖에 학군사관후보생 관련

제2장 군사교육요원 편성

제4조(군사교육요원) 제2조에 따른 군사교육요원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 ① 국방부에서 본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체통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따라 군에 있다.
-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총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며, 본교 교직원에 준하는 대우(대학 편의시설 이용, 상훈 등)를 한다. 다만, 개인 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 ③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 채용 시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중에서 임용하며,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조건은 육군참모총장과 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5조(군사교육 담당) ①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은 총장이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근무시간은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 표준일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교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6시간 이상 분산 교육(2일 이상)을 실시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자유선택 및 교양선택으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하며,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학 이수학점은 대학 수강제한 학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입영훈련) ①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② 입영훈련 교과편성, 기간과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본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입영훈련 군사학은 계절학기 개설과목의 자유선택 및 교양선택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우수인력 선발 지원

제8조(홍보업무 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1.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 자료 지원
2.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3. 그 밖에 기타 우수인력 선발에 필요한 예산

제9조(우수인력 선발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반 혜택을 부여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장학금 지급
2. 학군사관후보생 국내외 전·사적지 탐방 예산 지원
3. 학군사관후보생 기숙사 입사 우선권 부여

제5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0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본교는 국방부장관이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2. 군사학 교내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3. 학군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후보생 자치위원실
4. 학군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운동장 및 샤워실
5. 교보재 창고 및 그 밖에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11조(예산)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복지를 위한 예산지원(국내외 전·사적지탐방비, 복지비, 자치위원 및 후보생 격려비 등)
2. 학군사관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행사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
3.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및 선발 관련 예산

제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학군단장이 된다.
- ④ 선임교관, 학사지원실장, 학생지원실장, 기획예산실장, 예비군연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관이 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2.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제·개정 사항
3. 그 밖에 학군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에 따라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예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라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족과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17조(학생군사 교육 중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은 자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 따라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19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1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